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청 소 년 복 지 지 원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21.3.23. 공포, '21. 9.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 배치 기준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 나.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으로 함(안 제7조의4 신설)
-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확인이 어려워짐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삭제(안 제10조제2항제2호)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확대(3년→5년)하여 위탁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안 제23조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부터 제7조의4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 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시·군·구의 경우는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을 말한다)의 전담기구의 장과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시·군·구의 경우는 8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을 말한다)의 실무담당자를 둔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민간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상담복지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자
3.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제7조의4(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법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청소년 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을 말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영 제8조제1항”을
“영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 신설 >	제7조의3(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 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시·군·구의 경우는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을 말한다)의 전담기구의 장과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시·군·구의 경우는 8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을 말한다)의 실무담당자를 둔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민간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상담복지 분야의 학위를 소지

현행	개정안
	한 자 3. <u>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험</u> 이 있는 자
< 신설 >	제7조의4(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법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u>청소년 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을 말한다.</u>
제10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	제10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현행	개정안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생략) 2. <u>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u>	----- ----- 1. (현행과 같음) 2. <u>영 제8조제1항</u> ----- ----- -----
제13조(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호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조사·상담을 실시하고,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상담을 실시한 후 법 제10조에 따른 <u>운영위원회</u> 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지원 실시 여부, 보호지원 내용 및 보호지원 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	제13조(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 ① ----- ----- ----- ----- ----- ----- ----- ----- <u>심의위원회</u> ----- ----- ----- ----- ----- ----- -----

현 행	개정안
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생 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5년-----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6272